

광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가단5295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민아, 김대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1. 전남 장성군 B 전 382㎡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11. 6. 접수 제157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조합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 등을 양도하였다.

○ G은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23881), 광주지방법원은 2014. 11. 21. 'C는 G에게 63,978,771원 및 그 중 21,072,377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G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G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 위임받은 원고는 2018. 4. 18.경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은 2009년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 채권 등을 양도하였고, 위 은행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은 위임받은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446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1. 11. 'C는 원고에게 68,702,684원 및 그 중 23,632,731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 C는 자녀인 피고에게 전남 장성군 B 전 3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6.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8. 11. 6. 접수 제157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21. 7. 23.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C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C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판결 및 지급명령1)의 청구원인이 되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C가 피고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매매계약인데, 피고가 변제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L에게 C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역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해림

1) 이 사건 지급명령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에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최초 성립시기는 2001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이다.